

1. 개정이유

의료적성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적성검사기관인 병·의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,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의 근거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의료적성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관리 방안 마련(안 제7조제4항)

나.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 근거규정을 수정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한국교통안전공단 합의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(별지)

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.)은 제1항의 의료적성검사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.)”을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
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
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
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
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
한다.

리에 관한 규정」-----

